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방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등이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또는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4년 9월 30일

국무총리 정 흥 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관
장 이 기 권

●대통령령 제25645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기간이나 임신기간”을 “임신기간이나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이하 “출산전후휴가”라 한다) 기간 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자녀가 생후 15개월이 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육아휴직 급여의 특례) 제9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피보험자의 최초 1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한다.

제104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그 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15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고, 50만원을 하한액으로 한다)

$$\times \frac{\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text{단축 후 소정근로시간}}{\text{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이거나 육아휴직이 종료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같은 자녀에 대하여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피보험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피보험자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에 관하여는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고 계속 고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 요건을 확대하고, 경력의 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액을 증액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 요건 확대(제29조제1항제1호)

- 1) 현재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등의 계속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임신기간이나 출산전 후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다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원되지 아니하여,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육아기의 자녀가 있음에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2)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급요건에 생후 15개월까지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함.
- 3)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장려하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의 육아휴직 급여액 일부 증액(제95조의2 신설)

- 1) 현재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나,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여성인 관계로 육아휴직에 따른 여성 근로자의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점이 있음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의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의 첫 1개월의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액을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증액함.
- 2) 여성만이 아닌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증액(제104조의2제2항)

- 1) 육아기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바,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경력의 단절 현상이 빈발함에 따라,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극적인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
- 2) 현재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을 상향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부 령

●기획재정부령 제43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4년 9월 30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8항 중 “해양수산사무관으로, 감시관은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으로”를 “해양수산사무관으로”로 한다.

제13조제8항 중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로 한다.

별표 1의 서울세관관, 인천세관관, 수원세관관 및 부평세관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세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김포세관 및 구로세관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경기도 김포시(고촌읍 전호리 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에 한한다)·파주시(도라산 남북출입시설로 한정한다)
------	-------	---